

## 중랑구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보조) 채용공고

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60회(임시회) 기간제근로자(속기보조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0일  
중랑구의회 의장

### 1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

| 채용분야 | 채용인원 |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| 근무부서  |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속기보조 | 2명   | 2023. 2. 28. ~ 3. 8. | 의회사무국 | · 상임, 특별위원회, 본회의 회의 속기<br>· 회의록 작성 및 편집 |

### 2 근무조건

가. 근무기간 : 2023. 2. 28. ~ 3. 8.(6일)

나.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30~18:30)

다. 휴게시간 : 1일 1시간(12:00~13:00) 제공

※ 근무 및 휴게시간은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라. 보 수 : 일급 89,256원 (2023년 중랑구 생활임금 적용 - 시급 11,157원)

마. 근무지 : 중랑구의회 회의실

바. 기타사항 : 1개월 미만 근로자 - 고용·산재보험 가입, 1개월 이상 근로자 - 4대 보험 가입

### 3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

나. 성별 및 학력 : 제한 없음

다. 자격요건 : 한글속기(컴퓨터)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※ (기종 상관 없음)

라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마. 우대조건

- 채용 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

### 4

#### 선발방법

가. 심사 절차 : 서류 심사를 통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

- 서류심사 - 응시자의 기본 응시자격, 우대조건을 고려하여 근무 능력 및 적합성 심사

### 5

#### 접수일정 및 절차

| 일정    |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집 공고 | 2023.2.10.(금) ~ 2.16(목)  | - 중랑구의회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 채용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접수기간  | 2023.2.17.(금) ~ 2.21.(화) | - 제출방법: 전자우편만 접수( <a href="mailto:thansehd@jn.go.kr">thansehd@jn.go.kr</a> )<br>※ 접수명  <u>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(지원자 성명)</u> 으로 기재<br>- 제출기한 : 2023. 2. 21.(화) 18:00까지<br>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에 따라<br>응시원서 검토 후 응시자의 연락처로 접수 확인 문자 발송 |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문의전화 : 의회사무국 의정기록팀(☎ 02-2094-2154)     |
| 서류심사      | 2023.2.22.(수) | -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경력과 전문성 등을<br>종합하여 서류심사 |
| 합격자<br>발표 | 2023.2.23.(목) | - 개별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VI

### 제출서류

- 가. 이력서 1부
- 나. 자기소개서 1부
- 다. 자격증 사본 1부
- 라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마.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바. 주민등록초본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- 사. 통장 사본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
## VII

###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연락 불능, 구비서류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한 서류는 수정 불가합니다.
- 나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, 채용 관련 서류는 합격자 선정 후 파기합니다.  
(※ 단, 합격자의 서류는 1년간 보관)
- 다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시,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이 가능합니다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의회 의정기록팀(☎ 02-2094-215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